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521
- 발의자 : 송재혁 의원(찬성자 16명)
- 발의일 : 2019년 3월 29일
- 회부일 : 2019년 4월 1일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 자치 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3조).
- 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 다. 사업의 범위,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 다. 입법예고 (2019. 4. 8. ~ 4. 15.) 결과 : 의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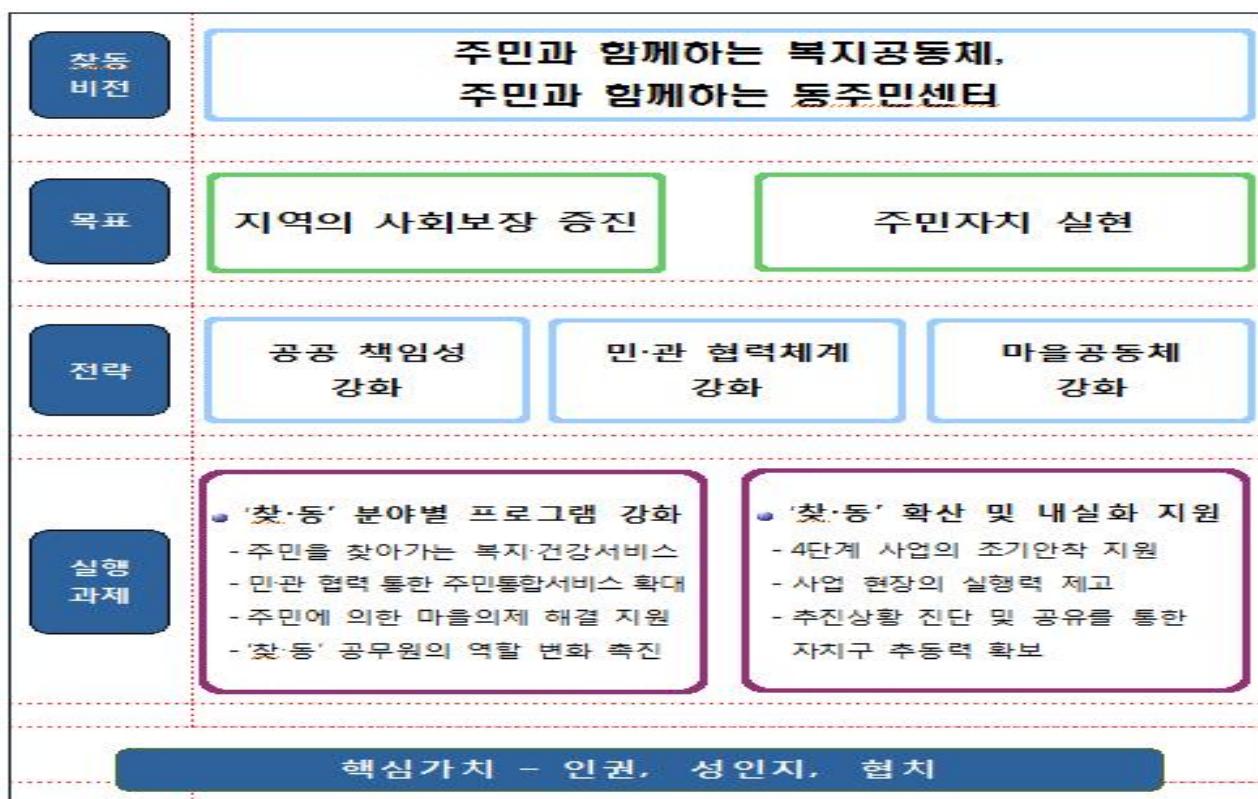
5. 검토의견

가. 제정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동(洞)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 증진을 추진하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사업은 행정, 주민자치, 마을, 복지, 건강, 여성 등이 상호 연계·융합되어 협업·소통·공유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44호-2014.9.14.)」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민선6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 핵심과제 6 ‘평생동안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4. 9. 4.)
- 「(가칭)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 (시장방침 제244호 / '14. 9. 14.)

□ 추진경과

- (가칭)‘洞 마을복지센터’ 계획 수립 : '14. 하반기
 -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복지건강분과) 구성, 추진방향 논의('14. 하반기)
 - (가칭)‘洞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 수립 ('14. 9. 14)
- 「찾·동」 단계별 사업 시행 : '15. 7월 ~
 - 1단계 사업 시행(13개구 80개동) : '15. 7월 ~
 - 2단계 사업 확대 시행(18개구 283개동) : '16. 7월 ~
 - 3단계 사업 확대 시행(24개구 342개동) : '17. 7월 ~
 - 4단계 사업 확대 시행(25개구 408개동) : '18. 5월 ~

※ 전면시행 24개구, 시범시행 1개구(강남구 / 6개동)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 '17. 2월 ~
 -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7. 2월
 - ‘찾·동’ 1단계 4개구 26개동 주민자치회 구성 : '17. 12월
 - ‘찾·동’ 2단계 13개구 65개동 주민자치회 구성 : '18. 2월 ~
- 본 제정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기본원칙(안 제3조),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안 제4조, 제5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안 제6조), 사업의 범위(안 제7조), 비용의 지원(안 제8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찾동”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의 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洞)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 증진을 추진하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 				
제2조(정의)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td><td style="width: 50%;">- 주민 자치</td></tr> <tr> <td>- 지역의 사회보장</td><td>- 마을 공동체</td></tr> </table>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주민 자치	- 지역의 사회보장	- 마을 공동체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주민 자치				
- 지역의 사회보장	- 마을 공동체				
제3조(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내부의 협력과 민관이 연계하는 통합적 운영체계 지향 - 지역중심·수요자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의 기획·집행 - 지역사회 사회보장증진을 위해 공공의 책무성 전제와 적정인력 투입 등 공공인프라 확충 및 공적 지원체계 확보 - 주민생태계 활동 및 지역의 공공의제에 주민참여 권리 명시 				
제4조(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지원, 정책 기본계획 및 실행 지원, 시·구·동 간 또는 민·관간 소통협력을 위한 논의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제5조(기본 계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 단위로 찾동 운영 기본계획수립, 실행계획은 매년마다 수립 				
제6조(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동 정책의 주요 현안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찾동 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사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사회보장증진과 공동체 복원 및 주민자치력 증진 위한 사업(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골목단위의 주민 공론장 조성 지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환 및 운영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서 찾동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나. 세부 내용 검토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 자치”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외 “지역의 사회보장”, “마을 공동체”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령(「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¹⁾),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을 인용하고 있음.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사회 안에서 민과 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 체계를 말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 보장을 동 단위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 자치”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4. “마을 공동체”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서 규정한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 동 조항의 정의 규정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밝혀 둠으로써 찾동 정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행정 집행 및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다만, 동 조례에서는 ‘주민’이란 단어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으나, 주민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바, 안 제8조의 비용의 지원 조항과 관련하여 정책 목적에 맞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범위의 설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또한, 안 제2조제1호 중 “민과 관이 함께 해결하는 체계”가 정책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 공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혼란시킬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기본원칙(안 제3조)

- 안 제3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내부의 부서 간 협력 및 민·관 통합적 운영체계 지향(안 제1호), 인권·지역·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정책 기획 및 집행(안 제2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공공의 책무성 및 공적 지원체계 확보(안 제3호), 주민의 지역 의제 참여 및 협치 권리 등의 기본 원칙(안 제4호)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임.

안 제3조(기본원칙) 찾동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찾동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내부의 부서 간에 협력하고 민과 관이 연계하는 통합적 운영체계를 지향한다.
2. 찾동은 인권에 기반 한 직무태도를 견지하며, 지역중심·수요자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3. 찾동은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공공의 책무성을 최우선으로 전제하며 그에 필요한 적정 인력의 투입 등 공공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지원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찾동에서 주민은 지역의 공공의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동 단위 협치의 주체로서 권리가 있다.

- 다만, 안 제3조제2호에서 찾동이 민관협력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 태도’라는 용어와 함께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여 맥락상 ‘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보일 수 있는 바,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안 제2조제1호의 정의 규정(민관 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 체계)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안 제3조제3호에서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지원체계 확보’ 등은 찾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가까운 내용으로,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조항에서 규정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과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는 시장에게 찾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과 ‘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가 달성하려는 찾동 사업 운영과 지원에 관한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찾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
2.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3. 시·구·동간 또는 민·관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위한 논의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4. 그 외 찾동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시장의 책무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장의 책무 중 안 제4조제1호의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²⁾), 같은 법 시행령 제8조³⁾)에 따르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복지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 확보의 책무를 구청장이 부담하고, 시장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감안한 합리적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지역별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는 각 자치구에서 제정하고 있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책무는 자치구청장이 부담하고, 시장은 이를 지원하는 주체이므로 ‘시장의 책무’에서 ‘확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4) 기본계획(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은 시장이 “찾동 운영 기본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찾동”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조치로 보여짐.

안 제5조(기본 계획 등) ① 시장은 찾동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찾동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3.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
4. 자원의 확보 및 배분
5. 그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찾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2)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3)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재 찾동 사업의 기본계획은 행정국을 중심으로 관련 실국(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서울혁신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본계획의 일관성과 계획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찾동 사업에는 여러 가지 시정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개별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바, 안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찾동 정책의 기본 방향'인지 여부 등을 살펴 제명 및 목적(운영 및 지원)과 같이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또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서울시 각 실·국의 찾동 정책 사업 관련 계획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고, 세부 사업들의 집행에 있어서 각 실·국별로 시장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바, 기계적 결합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융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운영위원회(안 제6조)

- 안 제6조는 시장은 기본계획 및 정책의 성과관리 등 찾동 정책의 주요 현안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찾동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안 제6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찾동 정책의 주요 현안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찾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찾동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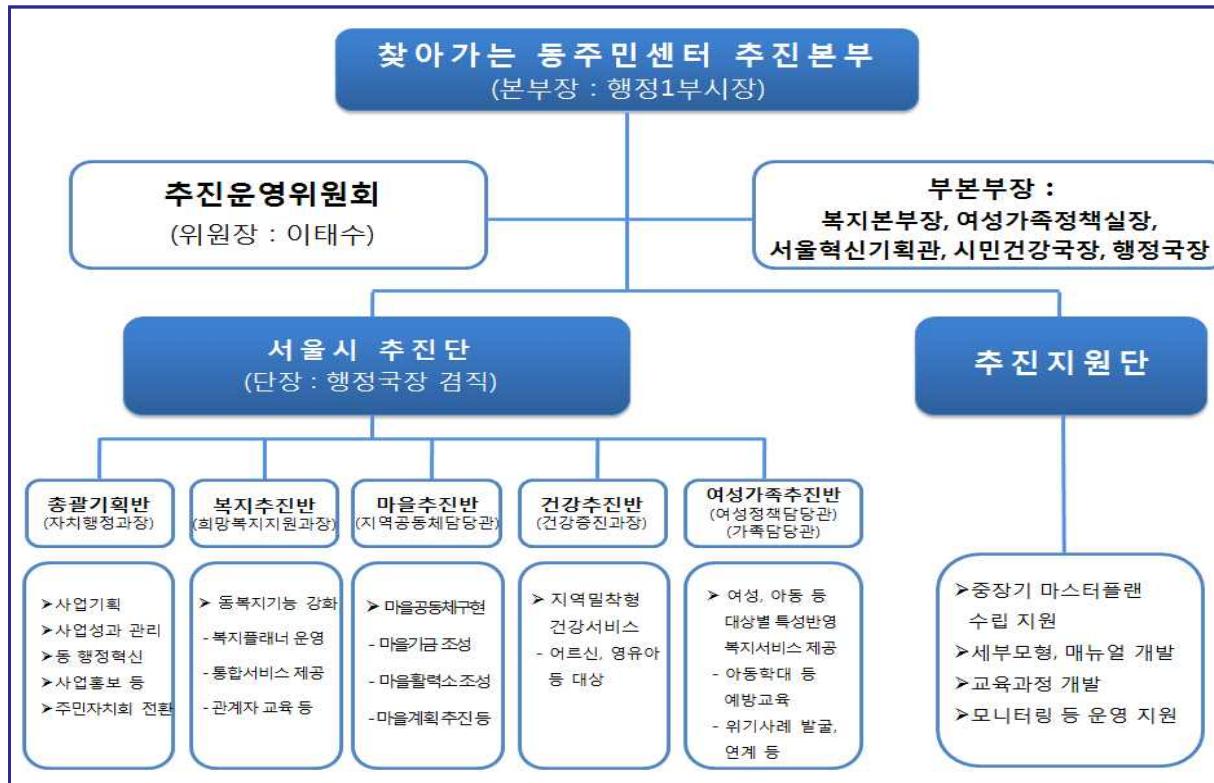
- ③ 서울특별시 찾동 관련(행정, 혁신, 여성, 복지, 건강) 실본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1. 행정, 주민자치, 여성, 복지, 건강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서울특별시 자치구 부구청장
 -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서울특별시 의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찾동 정책의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 2.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나, 품위손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현행 찾동 사업 추진은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산하에 서울시 추진단 및 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자문 기구로 ‘찾동 추진운영위원회’를 복지·보건·마을분야 등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총 25명)하여 자문과 심의를 통해 ‘찾동 추진본부’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미 운영해 오고 있음.

〈현행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운영위원회(총 25명) 구성 현황〉

- | | |
|---------|--|
| - 구 성 : | 복지·보건·마을분야 등 전문가, 시의원, 부구청장으로 구성 |
| • 위촉직 : | 분야별 2~4명으로 구성 |
| • 당연직 : | 추진본부 부본부장으로 구성 |
| - 임 기 : | 2년(연임가능) |
| - 기 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방향에 따른 주요사항 논의 및 자문 • 추진운영위원회 자문은 정책결정으로 수용, 이견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으로부터 일임을 받아 별도 회의 개최, 결정 • 단계별 공모·선정 절차에 따른 자치구 심사 및 선정 |

〈 현행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체계도 〉



-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및 제116조의25)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방침으로 운영하여 온 찾동추진위원회의 위법적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 중 ‘정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이 찾동에 대한 성과관리인지, 개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규정의 명확화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 4)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5)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또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관련하여 2년으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의원과 해당공무원의 경우 임면이 불분명한 바, 관련 규정의 명확화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행정국은 위원회 위촉 대상중 ‘서울특별시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하고, 공무원 및 의원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한 기간으로’해 줄 것을 개진함.

6) 사업의 범위(안 제7조)

- 안 제7조는 복지·건강·여성·마을·자치·행정의 영역에서 사회보장증진과 주민자치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찾동’ 사업의 활동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7조(사업의 범위) ① 찾동 사업은 지역의 사회보장증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복지 · 건강 · 여성 · 마을 · 자치 · 행정 등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간에 협력한다.

②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빈곤 · 소외 · 위기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편적 복지 · 돌봄 · 건강 정책의 추진과 복지 안전망을 위한 주민들의 활동 사업 등을 지원한다.

③ 공동체 복원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 활동, 골목단위의 주민 공론장 조성,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 동 조항에서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지역공동체 복원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명확성과 입법형식 및 체계상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7) 비용의 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는 주민 참여 및 주민자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이 찾동 협력자로 활동할 경우 물품과 실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찾동 활동에 따른 실비 등의 지급을 통해 명시적인 예산 근거를 마련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8조(비용의 지원) ① 주민 참여 및 주민자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동의 협력자로 위촉할 경우,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찾동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다만, 찾동의 협력자로 위촉된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에게 물품 및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협력자가 속하는 지역 구청장의 책무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⁶⁾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사업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지방보조금의 '운영비' 해석, 행정안전부),
 - 해당 조례안 제8조제1항의 '물품·실비'는 운영비로써, 조례에 적시할 경우 한시지원이 아닌 계속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조례에 운영비 지원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

6)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